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544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36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20. 12. 28.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